

식품공업과 제조물책임법 ①

제조물책임(PL)이란 무엇인가?

백 국 현 / 제일화재해상보험(주) 기업보험연구소 PL팀장

연재 순서

- 1 제조물책임(PL)이란 무엇인가?
- 2 제조업자의 PL대책-PLP와 PLD

지난 9월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해 2,000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1982년 최초로 의회에 상정된 이래 우여곡절을 거쳐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모양이다.

제조물책임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제조업자들에게는 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80년대 초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이 법이 기업 측의 반대로 인해 이제야 비로소 입법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기업에 악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한 세계 각국의 예를 볼 때 입법 이후 안전의식의 확산, 불

량률의 감소를 통한 제품품질의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제조물책임법을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EU국가, 일본 등 선진국들에 브라질, 중국, 필리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을 볼 때 선진국과 중진국 중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며, 이런 사실 때문에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즉, 제조물책임의 부담을 지지 않는 한국 기업은 불공정하게 우대받고 있다든지, 한국 기업이 자국의 소비자를 희생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은 상대국의 제조물책임법을 적용받고 있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

되는 반면, 수입되는 외국상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킬 근거가 없어 국내 소비자는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환경여건을 볼 때 제조물책임법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와 법제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지난 '94년 6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1년여의 유예기간을 둔 뒤 '9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도 제정과 시행 사이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제조업자들은 그 유예기간내에 제조물책임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년이라는 단기간 안에 모든 준비를 갖추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이란 무엇이며, 제조업자들은 이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일단 이번 호에서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살펴본다.

제조물책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간 발생한 PL사고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 중에서 식품공업에 대한 것만을 모아 보았다.

식품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PL사고의 유형은 여타 제조분야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다. 미생물을 원인으로 하는 식중독, 제조공정에서의 이물질의 혼입, 포장·용기 등의 불비(不備)에 따른 사고가 대표적이며, 드물게 경고·지시 등의 표시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기에 앞서 일단 가까운 일본의 사례부터 살펴보자. 일본식품위생협회가 발간한 「식품영업과 PL(제조물책임)법」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는 PL사고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비소밀크사건

유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제조한 「드

라이 밀크」에 사용된 품질안정제에 비소가 혼입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우유를 먹은 유아들에게서 중증 신체장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항구적인 구제사업을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생활비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제조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 쌀겨기름 PCB 혼입사건

쌀겨기름 제조 중 탈취공정에 열매체로 사용된 PCB가 혼입되어 서일본을 중심으로 광역에 걸쳐 피부장해, 내장질환, 신경질환 등의 장해를 겪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제조업자 등이 지불한 손해배상금액은 총 150억엔을 상회하고 있다.

■ 계란두부사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계란두부가 원인이 되어 415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1심 판결에서는 계란두부의 제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에 대하여 약 1,900만엔의 손해배상 명령이 있었고, 그 후 항소심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다.

■ 가공연근사건

구마모토현(熊本縣)의 식품제조회사가 가공한 연근이 원인이 되어 보툴리누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 36명의 피해자가 생겼는데, 이 중 11명이 사망하였다. 이 회사는 자본금 500만엔의 중소기업이었는데, 손해배상금 약 3,400만엔을 배상한 후 도산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많은 PL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송보다는 소비자단체의 중재로 합의에 이르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는 송사를 벌이기 싫어하는 국민성이나, 까다로운 법제도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이제 제조물책임법 입법에 따라 소비자의식이 확산되고, 소송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이런 사건들이 소비자고발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식품과 같이 소액다건의 PL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품목들은 PL문제에 민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들이 접수, 증제한 식품관련 PL사고 사례들이다. 일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PL사고라 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PL사고와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기재했다.

□ 이물질 혼입에 의한 사고

■ 쇠불이가 나온 어묵(1994)

어묵을 먹다가 직경 1.5cm의 쇠불이가 나와 치아가 손상되었다. 이 회사는 공장시설에 금속탐지기 설치 중 부품 하나가 빠져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하고, 치료비와 임금, 위자료 등을 배상했다.

■ 온도계 조각이 들어간 아이스크림(1994)

어린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에 깨어진 온도계 조각을 발견, 부모가 수은온도계가 아닐까 하여 소비자단체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알콜 온도계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아이를 검진한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제조업체가 심적 피해보상에 합의하였다.

■ 납조각이 혼입된 라면 스프(1992)

라면 조리 중 개봉하지 않은 스프에서 딱딱한 물체가 만져져 소비자단체에 조사를 의뢰했다. 스프를 개봉해 조사한 결과, 손톱크기의 납조각으로 확인되었다. 제조업체는 제조과정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납조각이 스프에 혼입된 것으로 해명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였다.

■ 쌀에서 나온 돌에 치아 손상(1996)

N사 매장에서 구입한 포장된 청결미를 구입, 밥을 지어 먹다 밥에서 나온 돌에 앞니 절반이 부러졌다. N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배상하였다.

■ 수입 통조림에서 나온 주석성분(1996)

네덜란드제 콩 통조림 캔에서 검은 녹이

발견되어 국내 수입사인 Y사를 고발하였다. 조사 결과, 녹이 아니라 캔의 주석 코팅이 벗겨져 내용물과 화학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덜란드의 제조업체와 수입사인 Y사는 사과와 함께 환불조치하였다.

■ 과자 안에서 나온 생쥐머리(1991)

감자튀김 스낵을 먹던 일가족 3명이 과자 봉지 밑바닥에서 튀겨진 생쥐머리(가로, 세로 각 3cm)를 발견했는데, 세 식구 모두 구토와 설사로 1주일간 병원에 다녀야 했다. 그동안 식품에서 각종 벌레, 쇠불이, 담배꽂초 등이 발견된 사례는 많았으나 실물 그대로의 생쥐머리가 발견되기는 처음이다. 제조업체측은 제조공정상 쥐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배상을 했다.

■ 담배꽂초가 들어간 맥주(1994)

맥주를 마시던 중 맥주에 들어 있는 담배꽂초를 발견하여 소비자단체에 고발했다. 제조업체는 빈병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깨끗이 씻어지지 않아 담배꽂초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배상하였다.

□ 유통기한과 관련한 사고

■ 유통기한 지난 과자 먹고 어린 남매 식중독(1993)

유통기한이 지난 샌드를 먹고 5살짜리 여아와 3살짜리 남아 두 남매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식중독이 발생,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제조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배상했다.

■ 유통기한 지난 두유 판매한 슈퍼마켓(1995)

아파트 상가 슈퍼에서 산 두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을 모르고 먹었다가 설사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및 부작용 발생시에는 치료비, 경비 및 임금까지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 슈퍼마켓 역시 치료비를 배상하고 구입가를 환불했다.

■ 유통기한 표시 지운 요구르트(1994)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를 판매한 L쇼핑이 소비자단체에 고발되었다. 제품의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워져 있음이 추가로 발견되어, 조사한 결과 대리점이 고의로 유통기한 표시를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는 대리점에 대한 관리소홀을 사과하였다.

■ 결혼 피로연 음식으로 집단 식중독 (1993)

결혼 피로연 음식을 계약하면서 6백명 분을 주문했으나, 하객의 절반도 먹지 못했고, 덜된 밥, 오래된 돼지고기, 오징어 등을 재료로 써서 결국 약 50명 정도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 피로연 업체는 손해를 배상했을 뿐 아니라 그 지방의 신문에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다.

□ 포장, 표시와 관련한 사고

■ 불충분한 고지(告知)로 고발조치당한 고농도 분유(1995)

P사가 계속 제조, 판매하던 분유를 30% 이상 진하게 농축시킨 상품을 약 15일간 시중에 유통시키면서 소비자에게 특별한 고지 없이 뚜껑 안쪽에 표시되어 있는 도표로만 표시하였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이 분유를 계속 먹여오던 자신의 생후 2개월된 아기에게 고농축분유를 먹였는데, 이 아이가 수차례 토하고 변의 상태가 나빠지는 등 이상증세를 나타냈다.

소비자단체는 P사가 유아식품의 내용물을 변경하면서 소비자들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아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했다.

■ 흡연욕구 자극하는 담배모양의 초콜릿 (1993)

초등학생들이 학교앞 문방구에서 담배모

양의 초콜릿을 구입하여 담배피우는 모습을 하고 다녔다. 이 초콜릿을 만든 K제과는 외제담배갑 모양의 포장을 만들고 제품명은 영문으로만 표기하였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 반품/교환처, 보관상 주의사항 등 규정된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관할시로부터 영업정지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 접합불량으로 변질가능성 있는 과자 회수(1995)

튀김과자에서 기름찌든 냄새가 나고, 맛이 변질되어 제조업체인 K사가 고발되었다. K사는 원료인 팜유가 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지 접합부분의 결함으로 인해 과자와 습한 공기가 접촉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이 시기에 제조해 유통시킨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회수조치했다.

□ 기타 원인불명의 사고

■ 수입 아이스크림 먹고 식중독 일으켜 (1996)

백화점내의 B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남매가 식중독 증세를 보여 입원하였다. 담당의사는 꼭 아이스크림 때문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고 당일 배설물을 검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제조사인 B사는 피해자와 50%만 배상키로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러 경우의 사례에 대해 살펴봐왔다. 그럼 이 사례와 연관시켜 제조물책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제조물책임은 원래 19세기 초 영·미에서 산업혁명의 결과로 발전된 개념이다. 산업혁명 이후 상품의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가 진행되면서 상품의 조그만 결함으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졌고, 이에 따라 PL사고가 사회문제로 대

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영미법에서 확립된 제조물책임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제조물책임 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제조물책임이 가장 엄격히 적용되는 나라이다. 또한 배심원제도¹⁾, 변호사 성공보수제도²⁾ 등 독특한 법적 제도로 인해 제조업자가 가장 무거운 제조물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은 1962년 Greenman對 Yuba Power Products社 사건³⁾을 계기로 제조물책임소송이 급격히 증가하여 1970년대 중반의 '제조물책임 위기(Product Liability Crisis)'와 1980년대 중반의 '보험위기(Insurance Crisis)'⁴⁾라는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자들은 결합있는 제조물에 대해 얼마만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해 2,000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자들은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도 제조업자들은 자신이 제조한 결합있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책임'에서 찾을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또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민법에 있는데, 굳이 제조물책임법을 따로 입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입법화하려고 하는 「제조물책임법案」(한국소비자보호원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은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위의 두 법조항-민법 제750조와 제조물책임법안-을 비교해보면, 제조물책임법을 별도로 뒤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두 법조항의 가장 큰 차이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단어의 유무이다. 즉, 민법에서는 제조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반면 제조물책임법안에는 그런 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제조물책임법안이 왜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제조물책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얘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제조물책임(PL)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나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1) 일반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이 법정에서 원고, 피고 쌍방의 주장을 듣고 피고의 책임유무, 배상금액을 판단하고, 판사는 이에 따라 판결을 하는 제도. 이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약자인 피해자(원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PL소송의 증가와 배상금액의 고액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 2) 소송판결의 승패와 관계없이 원고, 피고 각자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에만 손해배상금의 일정비율(보통 30~50%)을 변호사비용으로 지불한다. 따라서 PL피해자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사비용을 고려해 높은 배상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3) 1962년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Greenman對 Yuba Power Products社간의 Shopsmith라는 동력기에 의한 신체상해사고 소송에서 「당해 제품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알 수 없었던 결함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입증만으로 충분하며, 제품의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과실유무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모든 제조업자는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 4) 보험업이 생산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조물책임보험이 발달한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의 두 번에 걸친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과 보험인수의 거절로 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함’이라는 개념이다. 제조물책임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결함을 요건으로 한다. 즉, 제품이 제3자에게 아무리 큰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제품에 결함이 없는 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례에서도 각 제품에 공통적으로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물책임에서 말하는 ‘결함(Defects)’이란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및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결함은 ‘안전성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품질(상품성)의 결여’를 의미하는 ‘하자’와 구별된다. 위의 결혼식 피로연 사례에서 6백명분의 음식을 주문했으나, 양이 적어 절반도 먹지 못했다는 부분은 결함이 아닌 하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PL사고가 아니다. 그러나 불량한 음식을 제공해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안전성의 결여에 해당하는 결함이며, 전형적인 PL사고에 해당한다.

결함은 일반적으로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지시·경고상의 결함의 세가지로 분류된다.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이란 제조물의 설계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으로, 그 설계에 의해 생산된 모든 제조물에 결함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의 사례에서 네덜란드제 수입 통조림의 경우, 캔의 주석 코팅과 내용물 성분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일어난 사고로,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은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제조과정에서 설계와 다른 제조물이 제조된 것으로서, 이런 제조물이 품질검사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경우에 PL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위의 사례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다양한 사례들이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한다. 요즘은 식품의 제조공정이 더욱 복잡다양해지면서 식품에 갖가지 이물질이 들어갈 여지가 많다. 소비자단체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보면, 벌레나 돌조각 등 제품의 원료에서

나올 수 있는 이물질뿐 아니라 작업용 장갑, 포장끈 등 기본적인 관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시·경고상의 결함(Instruction, Warning Defect)은 제조물의 설계나 제조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그 제조물에 대해 적절한 지시나 경고를 붙이지 않았거나 그 지시나 경고가 부적절한 경우이다. 위에서 본 사례 중 사전홍보없이 제조된 고농도 분유의 경우가 대표적인 지시·경고상의 결함에 해당한다.

이처럼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결함이란 광범위한 개념이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경우 제조업자는 약간의 결함만으로도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물책임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개념은 ‘손해’이다. 제품에 아무리 큰 결함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이는 PL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손해에는 신체상의 손해, 재산상의 손해 등 직접적인 손해뿐 아니라 휴업손실 등 간접손해도 포함된다. 위의 사례에서 담배꽂초가 들어간 맥주의 사례나 납조각이 혼입된 라면스프 사례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엄격히 말한다면 PL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입법된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해 피해자 측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한다면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입증책임’이다. PL사고에 대해 누가 증명할 것인가. 또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해 제조물책임을 입증해야 할 당사자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다. 또한 결함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첫째,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점,

둘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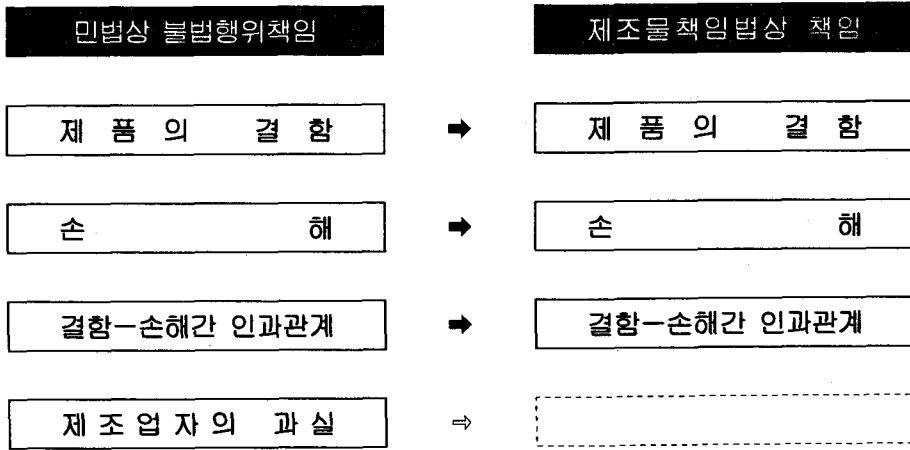
셋째, 그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즉 제품의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의 법적 근거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두고 있는 현재에는 여기에 또 하나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조업자가 아닌 피해자 측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여부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그 결함제조물이 의약품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입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뿐더러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책

입법에서는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를 증명할 필요 없이,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그리고 양자간의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상당부분 경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법 하에서의 책임을 '과실책임', 제조물책임법 하에서의 책임을 '무과실책임' 또는 '엄격책임'이라 한다.



<제조물책임법 도입 전후 입증책임 비교>

위에서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결함', '손해', '입증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럼 이런 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만 지는가? 그렇지 않다. 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뿐 아니라 제조물의 제조, 공급, 유통, 판매의 전과정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지게 되어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 N사 매장에서 구입한 포장된 청결미에서 나온 돌로 인해 치아 손상을 입은 경우, 판매업자인 N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배상하였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에 대한 정의는 세계 각국이 다소

상이하나, 1차 생산물 즉, 농·수·축산물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포장된 청결미 등 약간의 가공만 거쳤어도 이는 제조물에 해당하여 제조자, 판매자가 제조물책임을 진다.

- 결함있는 통조림을 수입한 Y사와 이 제품의 제조업체인 네덜란드의 회사(수출업체)는 연대하여 배상하였다. 즉, 제조업자뿐 아니라 수출입 관련자도 모두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다.
- 유통기한이 지난 두유를 판매한 슈퍼마

5) 제조물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켓 역시 피해자의 치료비를 배상하였다.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운반, 진열,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런 식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거하여야 함과 결합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품, 교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 표시를 지운 요구르트의 사례에서, 제조업체인 N사가 대리점에 대한 관리소홀을 근거로 배상하였으나,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과 이를 판매한 L쇼핑 역시 제조물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제조물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이 경우처럼 고의 또는 악의적인 경우에는 과도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⁶⁾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제조물책임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자는데 기본목적이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업경영에 심각한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다.

첫째, 배상책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품안전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보험료 등

새로운 원가부담 요인이 발생한다.

둘째, 정상시의 제품안전활동과,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의 방어활동 등에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해진다.

셋째, 미지의 배상책임 가능성이 있는 신제품의 개발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

넷째, 소비자의식이 강화되어 소송이 증가하며, 일단 소송이 걸리면 그 기업은 기업이미지에 커다란 소상을 입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PL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편은 아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입법되고 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제조물책임법 입법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제조업자가 무과실책임을 져야하는 시대가 목전에 도래한 것이다. 다소 두렵긴 하지만 대세는 피할 수 없는 것, 오직 정정당당히 승부하는 수 밖에 없다. 만든 제품에 자신이 있다면, 그리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최선을 다해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제품, 판매한 상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장인정신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이다.

6)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 배상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법리이지만, 영미법계 국가, 특히 미국의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보상적 손해 외에 가해자를 징벌코자 하는 취지의 징벌적 손해까지도 배상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배심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보상적 손해배상액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흔하여 제조물책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별 첨 :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案
(한국소비자보호원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고, 이로써 소비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및 부동산 중 분양공급주택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제조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2.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

③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말한다.

1. 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2.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3. 당해 제조물의 유통된 시기

제3조(손해배상책임)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면책사유)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3. 당해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이 정한 강

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이 강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는 사실

4.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5.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완성품 제조자의 표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각자가 그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6조(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의 추정)

①제조물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면책특약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제8조(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②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9조(과실상계)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결함이 있음을 알고 제조물을 사용한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

작하여야 한다.

제10조(관할) 이 법에 의한 訴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31조 및 제32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원고의 의사에 反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법은 이 법의 시행 후에 제조자가 유통시킨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